

국유철도 재산관리 기반체계 구축방안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state-run railroads

강유신*
Kang, Yu-Shin

추준섭**
Choo, Jun-Sup

김종태***
Kim, Jong-Tae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state-run railroads

This study examined the existing issues and current status of how to best approach the establishment of railroad asset of the corporation in the long run. It also explored some preventative measures for further problems.

Based on the law of state property and related railroad statutes, the research referred to basic plans for railroad management of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the outcome of file research, handbook of asset management, guidelines and policy of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for state property management, recommendation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fact-finding research of state property (miscellaneous properties). The findings are making a few suggestions on the service of the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nd Korail.

제 1 장 서 론

우리나라 국유철도재산은 1899년 노량진 ~ 제물포간 경인선 개통 이래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대륙 침략을 위한 이용수단으로 활용되어 오다가 8.15해방과 6.25동란 등 사회적 혼란기에 등기부 등본□토지대장 등 재산관련공부가 대부분 멸실 되었고, 사회적 혼란기에 생존을 위한 무분별한 점유가 발생 되었으며, 민생해결을 위한 경제개발 우선에 따른 처분위주 정책, 국유재산의 계속적인 감소방지를 위한 유지□보존위주 정책, 국유지 관리를 통한 재정수입의 증대 및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확대□활용위주의 국가정책에 따라 운영되어 왔다.

국유철도재산의 관리주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철도청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철도시설자산을 이관 받아 취득(매입, 관리환, 기부채납, 교환 등), 운용(사용□수익 허가, 대부계약 등), 처분(매각, 관리환, 교환, 양여, 신탁 등)등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방대한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공단이 철도청으로 부터 인계받은 일반철도재산은 일제가 철도건설 예정부지로 확보 하였다가 건설이 중단 된 미 건설선의 무단점유와 농경지로의 경작, 6.25 동란 등 혼란기에 피난민들의 주거지로서의 무단점유 등 100여년 동안 누적된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정확한 자료가 없어 공단은 2005년 1월 철도재산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 KR기술연구소, 정회원

E-mail : 3801kys@naver.com

TEL : (042)607-3407 FAX : (042)607-3322

** 한국철도시설공단, KR기술연구소, 정회원

*** 한국철도시설공단, KR기술연구소장, 정회원

공단이 위 재산관리 체제의 정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 경계 측량, 재산의 정리□활용, 재산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가를 현실적인 상황과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사전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 하고자 국유재산법과 철도재산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재산관리기본계획, 재산관리실무편람과 실태조사 결과, 재정경제부의 국유 재산관리 관련 정책과 지침, 국유재산(잡종재산)실태조사 자료, 감사원 지적사항, 국유재산 관련 각종 논문□학술지□세미나 자료 등을 살펴보고 그동안 철도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실무를 바탕으로 하여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한다.

제 2 장 국유재산의 관리제도

제 1 절 국유재산의 개요

광의의 국유재산은 국가가 행정목적 수행상 필요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으로서 토지□건물 등 부동산과 지상권□주식□특허권□현금□채권 등 권리, 기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협의로는 광의의 국유재산 중 국유재산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과 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 기구 등을 의미한다.

국유재산의 종류로는, 국가가 직접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행정재산,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기로 결정한 보존재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잡종재 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유재산의 관리기관으로서는 그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청”과 직접 담당하는 “관리청” 및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 포함”)이 있으며, 총괄청과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장 사무의 일부를 관리청, 소속 공무원, 다른 관리청 소속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할 수 있고,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관리청은 매년 하반기 재정경제부(총괄 청)의 작성지침에 따라 국유재산의 취득(매입, 관리환, 기부채납, 교환 등)과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등)대상 재산을 작성하여 총괄청에 제출하고 총괄청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매년초에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청에 송부하여 집행하게 된다.

국유재산의 법적특색은 원칙적으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취득 할 수 없고 행정□보존재산은 사권을 설정 할 수 없도록 융통성을 제한되고,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국유재산법, 국공유부동산 의 등기촉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청 명칭을 첨기하여 촉탁관서가 하고 있으며, 행정□보존 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은 민법상의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등 법률적 특색이 있다.

제 2 절 국유철도 재산관리의 법적근거

1. 일반철도자산과 고속철도자산

일반철도자산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 제1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부지 포함)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을 건교부와 공단 간에 일반철도시설자산 관 리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철도시설의 관리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속철도자산은 위 하여 기본법 제2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시설을 관리하고 그 철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 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철도시설관리권”이 설정 하여 관리하고 있다.

2. 철도시설사용료

2.1 철도시설사용료

철도시설 사용료는 기본법 제31조와 공단법 제25조가 정하는바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인 공단이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한국철도공사와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그 성격은 국유재산법상의 산정요율과 방법 등을 배제한 특별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료라고 볼 수 있다.

2.2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공단법 제26조는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 포함)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고, 그 대부받거나 사용 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공단법 제27조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 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철도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고 있다.

2.3.4. 국유재산을 활용한 사업개발

공단법 제7조는 철도의 건설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의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일반철도에서의 민자역사와 같은 사업개발은 제약을 받고 있다.

제 3 장 국유철도재산의 관리체제 기반구축

제 1 절 관리대상 재산

2006년 말 현재 공단은 위탁관리중인 자산은 공단 내부자료에 의하면 <표 3-1> 과 같이 국유 자산 22조 3,258억원과, 국가 등으로 이관준비 중에 있어 공단자산으로 관리중인 자산 19조 1,949억원을 합쳐 41조 5,207억원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도표 3-1. 공단소관 자산관리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위탁관리 국유자산	공 단 자 산		
			소 계	고정자산	건설중인자산
합 계	415,207	223,258	191,949	58,509	133,440
고속철도	119,989	77,829	42,160	18,545	23,615
일반철도	295,218	145,429	149,789	39,964	109,825

이 중 토지의 규모는 공단자산을 제외하고 위탁관리 중에 있는 토지는 <표 3-2> 과 같이 122,595건 (119,875천㎡), 86,441억원에 이른다.

도표 3-2. 공단소관 위탁관리 국유자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일반철도		고속철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91,995	223,258	171,278	145,429	20,717	77,829
토 지 (면적,천㎡)	122,595 (119,875)	86,441	106,605 (109,929)	82,565	15,990 (9,946)	3,876
공 작 물	64,751	130,977	60,978	58,521	3,773	72,456
기계기구	711	1,996	78	1,138	633	858
입 목 족	3	2	3	2	-	-
유가증권	10	429	10	429	-	-
무체재산	629	289	629	289	-	-

제 2 절 철도재산관리 기본계획

공단은 2004. 1. 1일 발족 이래 실무편람 마련 등 기초적인 국유철도재산 관리 체도를 마련하고, 2005년도에는 철도재산관리 기본계획의 수립하였고, 2006년도부터는 공단 ERP시스템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연계한 전산망 구축 및 철도재산관리 실태조사를 시행 하는 등 국유철도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제도 개선 및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재산관리 담당자들의 관리□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 민원 해소 및 예방을 위한 민원업무의 접수□체계를 정비, 재산관리 전산시스템을 공단ERP사업으로 추진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중전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¹⁾)과 호환되는 통합자산관리시스템 구축, 철도재산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도면□장부 정비, 철도용지 경계표 정비, 부조리 요인차단, 무단 점유 재산의 정리, 신규 무단점유 발생의 억제, 제도의 정비 및 유희지 활용 방안 등을 정하고 있다.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가 필요한 재산은 원상 복구 등 권리보전 조치하고, 불필요한 재산은 용도폐지 후 매각 처분하면 가능 할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이 있고, 예산확보, 사회적인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재산관리시스템이 정착 되어야 하고, 동 시스템을 기초로 현장 실무집행상의 장애 요인을 파악하여 실현 가능성 있는 정리계획을 수립 하여 집행하고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사전 예방조치에 주력 하여야 할 것이다.

제 3 절 재산관리제도와 시스템의 정착

1. 정확한 자료의 전산입력과 지속적인 정비□보완

현재 공단이 운영 또는 추진하고 있는 재산관리시스템은 정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하여, 공단 ERP시스템 사업의 일부로 구축 되었기 때문에 현장 실물관리에서부터 회계처리

1) 재정경제부는 2003년부터 운영해온 국가재정정보시스템(약칭 : NAFIS)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가동에 따라 2006회계연도 정부결산 지원을 끝으로 2007년 6월말 그 운영을 종료하였음.

및 대 정부 보고서까지 완벽하게 일괄 처리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공단의 업무 특성상 시설관리 부문 보다는 건설부문에 상대적으로 업무비중을 두게 되고, 기초자료의 미비, 업무의 복잡성□연속성, 착오가 발생 할 경우 원인규명에 곤란을 겪어야 하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많은 인력과 시일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재산관리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어야 한다.

정확한 기초자료가 입력되지 아니하면 그 출력자료는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되므로 실태조사를 실시결과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하고 불일치 재산의 주요내용인 면적상이, 말소된 토지, 미불용지, 다른기관 소유토지 등은 년차적인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각 필지별로 그 분할, 합병, 구획정리 등 그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보전조치 및 정리 하고, 사용□수익허가 등 활용가능재산 재산, 무단 점유된 재산, 매각 대상재산의 자료 등을 변동 즉시 수정□보완 하여 출력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통합적인 관리시스템과의 연계

공단 ERP시스템은 재산관련 기초자료 입력에서부터 경리, 회계처리, 결산작업에 이르기까지 일괄처리 되도록 하고, 중간의 수작업에 의한 인력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경영정보도 즉시 출력 가능 하도록 하며 의사결정을 지원 하고, 정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되도록 한다.

건설부문은 project사업으로서 사업이 준공되면 회계 처리는 뒤로 미루고 당해 조직은 해체되며 인력은 각자 다른 소속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유지관리(maintenance)부문은 미결로 남아 있는 건설중인 자산 계정이 많아 회계처리의 곤란을 초래하게 되므로 사업 준공일에 맞추어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건설부문(project)과 유지관리(maintenance)부문이 연계되도록 한다.

시설물관리시스템과 재산관리시스템의 분류체계가 달라 재산관리 대장, 도면과 실물의 불일치로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 하였으나 통합작업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 되는 문제점을 도출□보완하여 시설물관리시스템상의 변동사항이 재산관리시스템과 일치 되도록 하고, 시설물 유지□보수작업은 한국철도공사가 수탁시행하고 있으므로 한국철도공사 의 시설물관리시스템과도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사와 지역본부간에 업무계획수립과 집행, 현황과약, 현안사항 해결 등에 공감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시로 회의, 워크숍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하고, 용지매수 담당 과 재산관리담당간의 재산관리업무도 전산처리 및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초 취득 담당인 용지매수 담당이 정확한 자료를 입력과 함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재산 실무관리

권리보전은 부동산 기타 권리에 관한 재산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은 국가소유 임 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등록을 하며, 국유재산에 대한 각 관리청의 관리 및 책임 소재 를 명확히 하고 각 관리청의 명칭을 첨기 등기하는 업무로서²⁾, 실태조사결과 나타난 자료를 근거로 하여 타 관리청 경합재산, 일본인 명의 재산, 무주 부동산, 미등기□미등록, 기부채납 재산, 미불용지 등을 재정경제부의 “권리보전조치 요령” 에 의거 년차적인 정리계획을 수립 정리 하도록 한다.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재산(또는 보존재산)을 그 본래의 목적인 철도의 건설, 운영, 유지

2) “재산관리실무편람”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p68 -p75 참조

□보수 등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관리청 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함으로서 철도시설의 상부□하부 기타 철도의 건설, 운영 또는 유지□보수상 확보가 필요하나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재산을 활용하여 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국가수 입도 확보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수익허가는 특정인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데 따른 특혜로 인식 될 수 있으므로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전대금지 등 국유재산법상의 제약 요인을 지켜야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³⁾ 등을 이용한 일반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사용자를 선정 하도록 하고, 그 사용료 산정의 기초자료인 재산가액을 정확히 평가하여 업무처리에 공정성을 기한다.

또한, 사용자와의 접촉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료는 인터넷을 통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시설물의 축조 여부, 전대 여부 등 허가조건의 위배 여부 등의 조사는 GPS를 이용한 현장조사가 가능 하도록 보완함으로써 사용자와의 접촉을 줄여 사용자도 편리하고 재산관리 업무의 시간절약도 가능할 것이다.

무단 점유된 재산은 점유자가 당해 재산관리청의 정당한 허가(또는 계약)없이 국유재산을 점유 사용□수익 하는 행위로서 원상복구, 사용□수익허가 전환 또는 매각의 방법으로 정리가 필요한 재산이다.

무단점유는 6.25 사변 등 혼란기에 피난민 등 영세민이 역 주변에 주택을 지어 정착 하거나 철도 연변 인근 주민이 무단경작 또는 주차장 적치장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정밀 분석하여 년차적인 정리계획을 수립□정리 하고, 신규발생 예방에 집중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리계획 중 원상복구의 경우는 각 개별 재산에 따라 법적근거와 절차에 하자가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여도 도덕적, 정서적으로 정당성이 확보 되어야 하므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 하도록 하고, 대상재산은 열차 안전 운행상 지장여부, 유지□보수 등 관리상 지장 여부, 주변 환경 저해 요인, 시행가능성, 시행의 용이성, 실익,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원상복구 이후의 재발 방지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무단점유 취약지역은 대부분 도심 구간 내에 있으므로 당해 지방자치 단체와 도시계획 협의 등을 통하여 확보가 불필요한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원, 도로 등의 공공시설로 편입하여 매각 처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사용□수익허가 전환이 가능한 재산은 사용□수익허가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철도시설에서 멀리 떨어져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재산과, 폐선 부지□미건설선⁴⁾ 노선 확정 후의 활용 계획이 없는 재산은 용도폐지하여 매각 처분 하여야 할 것이다.

신규 발생의 예방을 위해서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를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고 있으므로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현장관리, 무단점유재산의 관리 및 예방업무 등을 유지보수 계약에 포함하여 위탁관리 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여 위탁관리 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무단점유 발생 시 한국철도공사가 공단에 통보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위탁계약이 되어 있지 않아 책임이 없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유철도재산은 활용 또는 매각 가능한 유희지가 많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3) 온비드(On-bid)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자산처분 전자입찰시스템

4) 미건설선 : 일제시 철도건설 예정 부지로서 확보 하였으나 건설이 중단된 철도로서 동해중부선, 동해북부선 등이 있다

사업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한국철도공사에 출자 되었고, 대부분 열차가 운영되고 있는 철도시설 또는 보호에 필요한 행정□보존재산이며, 철도건설 또는 개량에 따라 발생하는 폐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매각 가능한 토지는 그리 많지 않다.

경의선 폐선부지 중 서울시 구간의 경우 철도시설이 지하화 됨에 따라 상부 토지는 철도시설 유지보호상 확보하여야 할 토지이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원 등 녹지로 활용할 수 선부지 등도 도시구간을 제외하고는 도로□농경지 등으로 이용되거나, 절개지, 터널 등으로 있도록 공단과 협의 중에 있으나, 경춘선 폐선부지 서울시 구간의 경우는 대부분 확보가 불필요하므로 용도 폐지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여 도로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유지를 활용한 사업개발은 사익보다는 공익, 작은 이익 보다는 큰 이익, 생태복원과 역사성을 존중, 단기적 활용 보다는 장기적 활용, 국지적 활용보다는 거시적, 광역적 활용 하는 원칙을 기준으로 공단은 건설과 관련된 역세권 개발 등 대규모 사업에 주력하도록 하고, 소규모 토지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통한 활용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제 4 장 결론 및 향후과제

철도재산은 국유재산법과 철도재산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관리 되어야 한다. 철도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현황 파악이 중요하고, 파악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화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하며 조급하게 단시일 내에 모든 일을 해결하려 들지 말고,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는 철도재산관리기본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이다. 동 계획은 철도재산관리에 관한 현안사항과 실태조사, 전산화, 관련 조직간의 유기적인 시스템의 구성 등 향후 추진해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보고서로서의 단기적인 자료에 한정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연속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는 철도재산관리 실태조사결과의 적극 활용이다. 공단은 일반철도재산을 철도청으로부터 법적으로 서류상 인계 받은 것으로 각 재산별로 구체적인 현황과 문제점 파악이 불가능 하였을 것이므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존조치, 사용□수익허가, 사업개발, 매각처 분 등의 구체적인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 나가야 한다.

셋째는 전산시스템의 보완과 자료의 변경사항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전산화만 되면 모든 업무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전산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구축 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적절하게 운용 및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에 불과 하므로 각종 자료의 오류나 수정 변경 할 내용은 즉시 수정하여 현실성 있게 운용되어야 한다.

넷째는 관련 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 하여야 한다. 재산관리 업무는 독자적으로 추진 할 수가 없고 관련 조직간 또는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업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다. 공단과 건교부□관련 지방자치단체□한국철도공사□민원인과의 관계, 공단 내부의 관련 부서□지역본부간에 공감대가 형성 되어 상호 협조하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재산관리업무는 업무의 곤란성으로 인하여 대부분 기피하는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유인책으로 가점부여, 수당지급 등을 통하여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재산관리실무편람”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2. 철도재산관리 기본계획”, 한국철도시설공단, 2005
3. 철도용지 실태조사 및 D/B 구축용역”, 한국철도시설공단. 2006.6
4. 목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재정경제부, 2007
5. 경의선 및 경춘선 폐선예정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용역”, 한국철도시설공단,2006.6
6. 목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잡종재산'을 중심으로”, 최유근,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2007
7. 목공유지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옥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2006
8. 목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토지를 중심으로, 송영국,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2006
9. 목유재산관리에 있어 효율적 경영관리 체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국유부동산을 중심으로”, 서종덕,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2006
10. 목유지관리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용태 경원대 행정대학원 2005
11. 서울시 철도 지하화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용산 철도교통 활성화를 중심으로)자료, 진영 국회의원실, 2005
12. 서울시 유희철도부지 활용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13. 국유 일반재산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2007. 4
14. 국유재산